

□ 운수종사자 보수교육(4시간) 일정

교육 날짜	구분	대상	교육 장소
10/21(월)	오전	여객/화물	포항시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
10/22(화)	오전	여객/화물	
10/24(목)	오전	여객/화물	
10/25(금)	오전	여객/화물	
10/26(토)	오전	여객/화물	
10/28(월)	오전	여객/화물	
10/29(화)	오전	여객/화물	
10/31(목)	오전	여객/화물	
11/1(금)	오전	여객/화물	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
11/2(토)	오전	여객/화물	
11/2(토)	오후	화물	
11/6(수)	오전	여객/화물	
11/8(금)	오전	여객/화물	
11/10(일)	오전	화물	
11/10(일)	오후	화물	
11/17(일)	오전	여객/화물	
11/17(일)	오후	화물	
11/20(수)	오전	여객/화물	
11/22(금)	오전	여객/화물	
11/24(일)	오전	화물	
11/24(일)	오후	화물	
11/28(목)	오전	여객/화물	

※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>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인 경우, 보수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.

- 1안: 보수교육(4시간) 2회 이수(총 8시간 이수로 인정)
- 2안: 강화교육(8시간) 1회 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교육(8시간) 1회 이수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(운수종사자 교육 등) 2항

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.

3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<신설 2020. 12. 29.>

※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면제입니다.(지정폐기물, 유해화학물질, 고압가스는 해당 없음)

□ 운수종사자 신규교육(16시간) 일정

교육 기간	대상	교육 장소
11/12(화)~11/13(수)	여객	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
12/11(수)~12/12(목)	여객	

※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여객 신규교육을 이수한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.

<참고> 여객 신규교육의 대상자는?

- 여객(버스, 택시) 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(단,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.)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8조에 의거 신규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「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(16시간)

□ 운수종사자 강화교육(8시간) 일정

교육 날짜	대상	교육 장소
11/26(화)	여객/화물	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
12/13(금)		

※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강화교육을 이수한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.

<참고> 강화교육의 대상자는?

- 법령위반자(준수사항 위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)
 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
 -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<개정 2022. 1. 28.>
 -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(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)
 -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(운수종사자) 준수사항 위반자로 2022. 11. 1.~2023. 10. 31.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
- 특별검사 대상자
 - 2022. 11. 1.~2023. 10. 31.까지 특별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자
 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
 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